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

(제 9편 추가설비)

(2장-외부의견조회)

2020. 04.



선 체 규 칙 개 발 팀

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0.06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● COVID-19 Pandemic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 신설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하역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검사</p> <p>201. <생략></p> <p>202. 하역설비의 검사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검사시기</p> <p>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.</p> <p>(1) 등록검사는 안전사용하중 등을 처음으로 지정할 때 시행한다.</p> <p>(2) 연차검사는 선급 정기적 검사 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.</p> <p>(3) 하중시험은 등록검사시기 및 등록검사나 전회 하중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시행한다.</p> <p>(4) 임시검사는 하역장치가 정기적 검사를 받을 시기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한다.</p> <p>(가) 구조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때 및 수리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나) 하역절차, 리깅배치, 작동 및 제어방법에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다) 안전사용하중의 지정 및 표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</p> <p>(라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【지침 참조】</p> <p><새롭게 추가></p> <p>3. <생략></p> <p>203. ~ 205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~ 제 9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~ 제 10 장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하역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검사</p> <p>201. <현행과 동일></p> <p>202. 하역설비의 검사</p> <p>1. <현행과 동일></p> <p>2. 검사시기</p> <p>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.</p> <p>(1) 등록검사는 안전사용하중 등을 처음으로 지정할 때 시행한다.</p> <p>(2) 연차검사는 선급 정기적 검사 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.</p> <p>(3) 하중시험은 등록검사시기 및 등록검사나 전회 하중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시행한다.</p> <p>(4) 임시검사는 하역장치가 정기적 검사를 받을 시기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한다.</p> <p>(가) 구조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때 및 수리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나) 하역절차, 리깅배치, 작동 및 제어방법에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다) 안전사용하중의 지정 및 표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</p> <p>(라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【지침 참조】</p> <p>(5) (2)호에서 (4)호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검사 연기는 1편 1장 901.의 6항을 따른다.</p> <p>3. <현행과 동일></p> <p>203. ~ 205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~ 제 9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~ 제 10 장 <현행과 동일></p>	<p>- COVID-19 Pandemic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을 신설함</p>